



국회 토론회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2023. 7. 18. (화) 10:00~12:4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 박홍근, 이현승, 한정애 국회의원)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

주관/ 곰보금지프로젝트, 데일리벳,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목 차

:: 개회사	박흥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4
	이헌승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6
	한정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8
:: 축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10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14
:: 발제	전진경 대표(동물권행동 카라)..... 17
	개 식용 산업의 실태와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서국화 대표(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47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과제
	이상경 팀장(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65
	해외 개 식용 금지 현황과 개농장 전업 지원 사례
:: 좌장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
:: 토론	천명선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 77
	김태수 팀장(경기도 동물학대방지팀)..... 79
	김지숙 기자(한겨레 신문 애니멀피플)..... 81
	김세진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89

개 회 사

반갑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 박홍근입니다.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관해주신 여러 동물권 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후원해주신 정부 부처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 홍 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늘 죄인 같았는데 지금은 속이 아주 시원합니다”

30여 년 넘게 개를 사육해 ‘식용 개’를 공급하는 일을 했던 사장님께서 개 농장을 폐업하고 농사로 전업하며 한 말입니다. 학교와 식당 등을 돌며 음식 찌꺼기를 모으며 백여 마리 개에게 급여하면서 개 농장을 운영해 왔지만, 변화하는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6.7%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개인의 의사보다 타인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이 같은 응답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변화하는 사회적 의식과는 달리, 현실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정부가 시작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년 가까이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

다. 개 식용 금지 반대의견이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체하는 동안, 우리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개 식용 산업의 합법적 시설에 대한 전업과 폐업을 지원하는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 식용 논란,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 농장을 폐쇄한 사장님은 개 짖는 소리도 없고, 배설물 냄새도 사라져 편한 마음으로 여행도 갈 수 있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과, 개 식용 없는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 또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8일

박 홍 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이현승 의원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 여러분과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개 식용과 관련하여 첨예한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과 조례가 계속해서 제출되고 있는 만큼, 어느 해보다도 올 여름은 개 식용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현행 관련 법에는 개 식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식용 목적 사육을 금지하는 규정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해외 국가가 동물보호의 측면과 위생보건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 후에 분명한 입장과 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 승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더욱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동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식용화하는 것의 위험성을 우리 모두가 경험한 만큼, 공중 보건이나 질병 관리 측면에서도 개 식용 종식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2021년부터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어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큰 성과 없이 최근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지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국회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이 현 승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개 회 사

반갑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정말 많은 단체와 활동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데일리벳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등 다들 동물권 향상을 위해 굶은 일 마다 앓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한 정 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시대가 변했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거듭난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중국, 베트남과 함께 개 식용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 베트남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개 식용과 관련한 것들이 단순 사육 정도가 아니라 점차 대형 축산산업화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개가 축산법상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식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개식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축산법에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은 식용 목적이 아니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육동물을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가축과 식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식품위생법에서는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고기를 가공·유통·조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고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가 관습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불법과 비위생
문제가 처참할 지경입니다.

오랜 관습이라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될 순 없습니다. 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 등을 고려해 이제 개 식용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실시(22년 4월)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의 86%가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개식용은 국민
인식에도 크게 반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바로 개 식용의 종식을 고할 때가 됐습니다. 개 식용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지난 달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특별
법은 개 식용 종식을 전제로 농장주에게 전·폐업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사항 등
을 담았습니다.

정부를 대신해 법안을 준비한 만큼, 정부 부처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함께 반드시 법안을 관철시키겠습니다.

개 식용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3년 7월 18일

한 정 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먼저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동물복지를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동물복지국회포럼 이현승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 기 현
국민의힘 당대표

아시다시피 개 식용 문제는 항상 나오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에 해당하면서도 축산법 상 가축에 해당하는 동물은 개와 토끼 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개의 경우, 축산물위생법의 미적용으로 인해 도살 이후 식육 유통 과정이 불투명하여, 방역과 공중위생 측면에서 여러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살의 과정에서 잔인한 방법이 동원됨으로써, 동물 학대로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변화의 시작이며, 진정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련된 시의적절한 토론의 자리를 통해 동물복지와 개 식용 종식에 대해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귀한 시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8일

김 기 현 국민의힘 당대표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이현승 의원님과 함께 후원하고 준비해주신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 등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어서 관심이 큽니다.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552만 가구입니다. 대한민국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이들 중 81.6%는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높지만 제도는 아직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을 그만해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으로 정부는 2021년 12월부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1년 7개월간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광 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는 개 식용 문제에 대한 논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개 식용 산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 논쟁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존 산업에 종사한 분들에 대한 소득 방안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개 식용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폭넓은 의견수렴과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로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도출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8일

박 광 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축 사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의원입니다.

먼저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부 사회를 맡아주신 이학범 대표님, 2부 본 행사 좌장을 맡아주신 우희종 명예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담당해주신 전진경 대표님, 서국화 대표님, 이상경 팀장님과 토론자로 나서주신 네 분의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 등 동물권 확대에 대한 공감과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동물보호단체, 육견업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최종적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개를 포함한 반려동물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 다수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의 토론회 개최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현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상황을 점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 식용 산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업종 전환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지향은 동시에 모두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개 식용을 넘어 육류소비를 줄이고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해 가겠습니다.

개와 같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축산 동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 농장 구축, 전시·실험동물 존엄성 고취를 위한 규제와 처벌 강화, 유실·유기·야생동물 구조와 보호 강화 등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 함께하신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8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발제
1

개 식용 산업의 실태와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전진경 대표(동물권행동 카라)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 개 식용 산업의 실태와 개 식용 종식 로드맵



2023년 7월 18일 |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

목차

1. 대한민국 개 식용 산업의 흐름 및 국제사회 동향
2.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 구 발족과 법령의 변화
3. 대한민국 개농장 현황과 실태 - 개농장의 메카, 경기도
4. 개 식용 산업 유통 실태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6.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가 로드맵

01

대한민국 개 식용 산업의 흐름 및 국제사회 동향

1. 국내 개 식용 산업 흐름 - 개를 전시, 도살, 판매하던 가 축시장의 몰락

- 성남시 모란개시장 개 전시 및 도살시설 철거 결정(2016), 태평동 개 도살장 행정대집행 (2018)
- 부산광역시 구포가축시장 완전 폐쇄(2019)
- 서울특별시 '개 도살 제로 도시' 선언(2019)
- 대구광역시 칠성가축시장에 대한 폐쇄 여론 지속



1. 20대 국회 발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트리플 법안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를 가축에서 제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임의 도살 금지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쓰레기 동물 먹이로 사용 금지



1. 국제적 흐름 - 개 식용 금지 추세

-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등 해외 여러나라 '개 식용'을 제한, 금지하는 조치 시행 중

중국 정부는 국가 가축·가금 목록에서 개를 제외함(2020). 선전시, 주하이시는 개 식용을 명시적으로 금지

[The W]반복되는 복날 '개고기' 논란... '개식용, 선진국 중 유일'



출처: 머니투데이



02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발족과 법령의 변화

2.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발족

- 2021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왔다”
- 2021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등 6개 부처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 구성하여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이하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
- 2022년 4월까지 논의하여 결론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기한 연장 반복
-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종식 시기 및 종식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대립으로 공회전
- 개 식용 종식 관련 여론조사(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팀)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대해 64.1%가 찬성을, 향후 개고기 취식 의향있음은 12.9%에 그침(강원대 동물법센터 학술대회/ 2022년 6월 17일)

보도자료	
2021년 11월 25일 배포 즉시 보도 (총 3매)	
농식품부 개식용문제T/F 국무조정실 농원국토해양정책관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문체부 소통지원과 할안부 자치행정과 기재부 산업경제과	담당자 통장 김홍운, 사무관 양성철 (044-201-2683, 2684) 과장 이연숙, 사무관 조연희 (044-200-2231, 2233) 과장 최대원, 사무관 김종태 (043-719-2010, 2011) 과장 조석물, 사무관 최진성 (044-201-7001, 7005) 과장 박소정, 사무관 이시종 (044-203-3031, 2973) 과장 채수경, 사무관 홍미가 (044-205-3101, 3120) 과장 이슬람, 사무관 류환술 (044-215-4530, 4533)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집중 논의
 - 관련 업계 실태조사, 사회적 논의기구를 정부 협의체가 뒷받침 -

《 주요 내용 》

- [11.25.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 후 발표]
- 지난 10월부터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긴 총 시안 협의
-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정부 협의체가 뒷받침
 - (논의기구)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
 - (장부회의체) 국무조정실장 주재, 농식품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여
 - 논의기구 자원 실태조사 추진, 업계 지원방안 등 논의 결과에 대한 이행방안 마련
- 개 사육농가, 도축·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보도자료			
보도 일시 담당 부서	2022. 5. 6.(금) 11:00 5. 7.(토) 초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사무국	배포 일시 책임자 담당자	2022. 5. 6.(금) 09:00 과 장 이 진 (044-201-2683) 사무관 양성철 (044-201-2684)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 위원회 운영 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 -

주요 내용

-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하여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를 활발히 논의해옴
- 식용 목적 개 사육 및 개고기 유통 등 업계 현황 조사를 완료하여 논의의 기초자료를 확보
- 위원회는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 형성
-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 중으로,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정광호)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 회의 실적 : 전체회의 7회, 소위원회 7회 개최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2.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법령 변화

- 2023년 4월 개정 동물보호법: 임의도살 금지 명문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6조)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2. 동물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 -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 '23.04.

- 가.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유죄 확정판결 선고받은 자에 동물사육금지 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 도입(제10조의2)
- 나. 개·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하고 폐업 내지 업종 전환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 근거(제10조의4)

“보신탕 판매 금지”...태영호, 개 식용 금지 법안 발의

개·고양이 식용 사용·판매 금지
동물학대자 최대 10년까지 징역

등록 2023-04-14 오전 11:04:00
수정 2023-04-14 오전 11:04:27

카라



김기덕 기자

N 카라뉴스



스스크림

카라 URL 복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을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태 의원은 또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존 개·고양이 식용 사업을 하던 자가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 전환을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 및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출처: 이데일리

2.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 김지향 서울시의원 발의 / '23.05.

- 가. 개·고양이 식용금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정함(제3조)
- 나. 개·고양이 식용금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다.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등을 생업으로 하는 자의 폐업 및 업종전환 등을 위한 사업 등 규정(제6조)
- 라.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제7조)
- 마. 개고기 취급 업소에 위생단속 통해 과태료 부과 규정(제8조)

2.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23.06.

- 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금지(제5조)
- 나. 국가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을 수립 의무(제6조)
 - : 식용개농장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
 - :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 농장주 소유권 포기한 개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정부의 식용개농장 폐업 지원 근거(제9조)
 - : 다만 무허가, 불법 개농장의 경우 지원 불가
 - : 폐쇄 시기에 따른 우선 지원 또는 차등 지원
 - : 지원 대상은 시설물 잔존가액 및 시설철거비, 소유권 포기된 개의 처분 등
- 라. 정부의 식용개농장 농장주 전업 지원 근거(제10조)
- 마.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6조)

□ 폐업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농장주가 해당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식용개농장의 폐쇄 시기에 따라 우선 지원 또는 차등 지원할 수 있음(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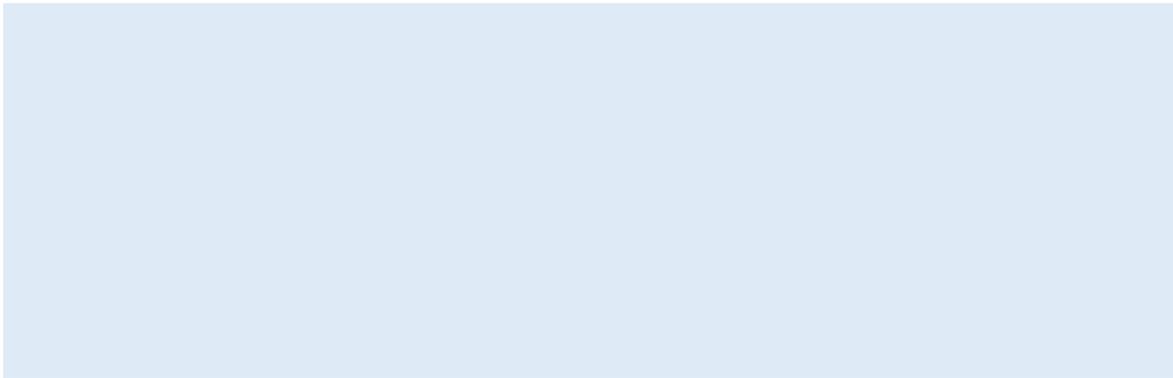
1. 시설물잔존가액 및 시설철거비
2.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처분
3. 그 밖에 폐업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처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제2항)

1.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의 이관
2. 「동물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로의 이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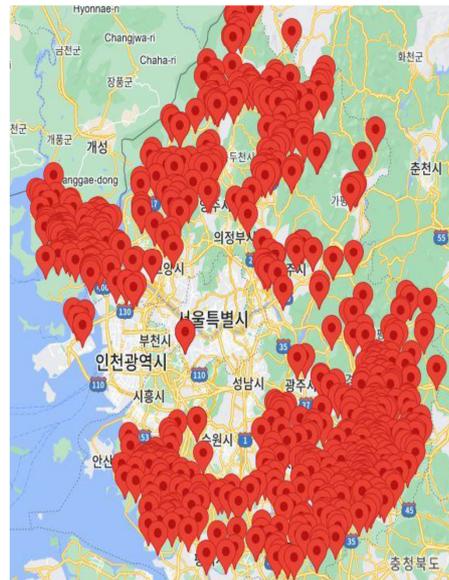
03

대한민국 개농장 현황과 실태 - 개농장의 메카,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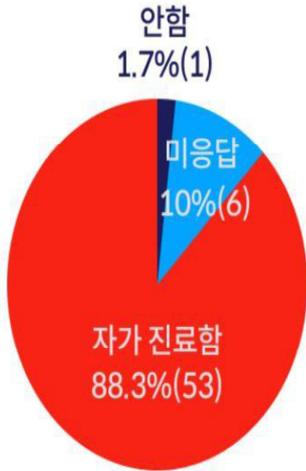
3. 경기도 개농장 실태조사 결과

- 개농장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 내 일부 표본 선정하여 155곳 개농장 전수 조사 실시(조사 기간: 2020년 5월 ~ 2020년 12월)
- 80% 이상의 개농장은 2000년대 들어 개업. 이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금지 조치 및 2007년 가축분뇨법으로 개농장 배출시설 신고를 받기 시작한 때와 겹침
- 폐업률 반영 시 추산 폐업수는 최대 465개소로 모집단인 916곳의 약 50%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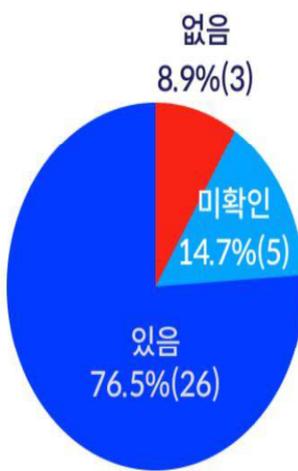


3. 경기도 개농장 실태조사 결과 - 위법 및 불법사항

○ 자가 진료



○ 먹이 제공 흔적



○ 물 제공 흔적



3. 경기도 개농장 실태조사 결과 - 위법 및 불법사항

○ 음식물 쓰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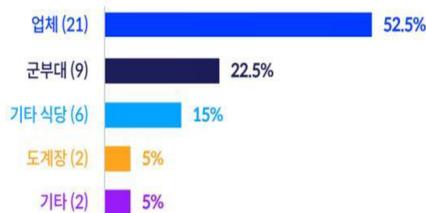
끓이는지 여부



○ 먹이 급여 및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유입 경로



3. 경기도 개농장 실태조사 결과 - 위법 및 불법사항

○ 도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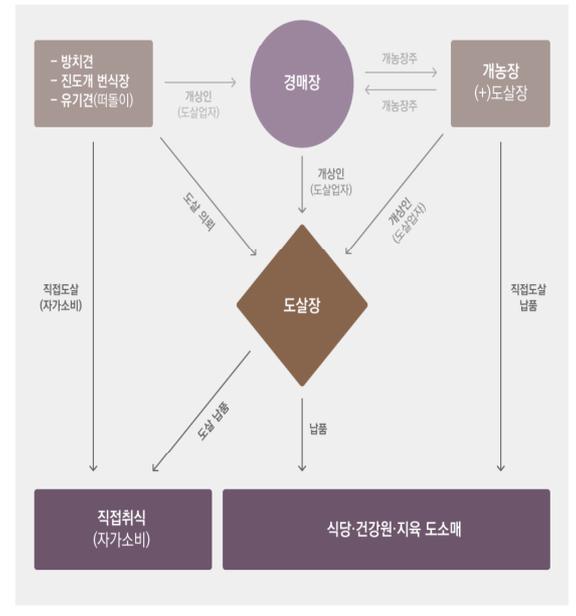


04

개 식용 산업 유통 실태

4. 개 식용 산업 유통 실태

-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동물권행동 카라가 추적한 '00축산' 거래 개농장 파악 결과 18개 소 중 신고된 곳은 단 2곳 (전북, 전남, 충남지역)
- 개상인 1인이 '도살'용 개를 공급하는 곳은 조사된 곳만 4개소(경기 시흥, 안산, 수원, 모란시장 등)
- 인근 재래시장 내 신고된 정육점, 건강원, 사철탕집 등에 지육 거래(안산, 시흥도살장)



4. 개 식용 산업 유통 실태



4. 개 식용 산업 유통 실태



4. 개 식용 산업 유통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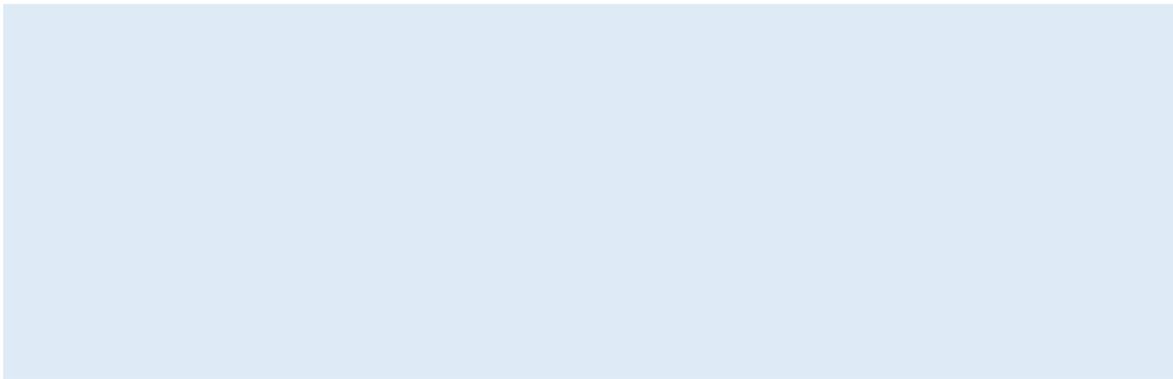


4. 개 식용 산업 유통 실태



0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 파주소재 개경매장 경매횟수 및 경매 거래 규모 (`21년 9월~11월)

구분	월	거래건수	거래 마리수	거래당 마리수	거래총액(원)	거래당 금액(원)	마리당 금액(원)
구매	9월	244	1261	5.2	240,446,000	985,434	130,679
	10월	266	1518	5.7	280,710,000	1,055,301	184,921
	11월	229	1278	5.6	233,410,000	1,019,258	182,637
	합계/평균	739	4057	5.5	754,566,000	1,021,064	185,991
판매	9월	223	1464	6.6	236,405,000	1,060,112	161,479
	10월	280	1699	6.1	280,195,000	1,000,696	164,918
	11월	243	1450	6.0	220,260,000	906,420	151,903
	합계/평균	746	4613	6.2	736,860,000	987,748	159,736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 개경매장 현금 거래량 및 수수료

- 21년 9월~11월간 구매총액은 7.5억, 판매총액 7.3억원
- 경매장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건당 6%
- 3개월간 구매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4,500여만 원, 판매자로부터 4,400여만 원으로 한달 평균 3,000만 원의 수익 발생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 파주소재 개경매장 거래전표

경매 전표(판매자)

농장번호: [] (판매자): [] 서명: []

농장: [] 2021-09-17 14:17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순서	양	견종	성별	상태	비고	판매금액	판매자	수
45	73	누렁이	-	-	-	240,000		1
46	73	누렁이	♂	-	-	300,000		1
78	73	누렁이	♀	-	-	250,000		1
47	74	누렁이	-	-	-	300,000		1
48	74	누렁이	♂	-	유상	-	양식사	-
49	75	누렁이	-	-	-	350,000		1
79	74	누렁이	♀	-	-	240,000		1
50	75	누렁이	♂	-	-	300,000		1
51	76	누렁이	-	-	-	260,000		1
52	76	누렁이	♂	-	-	340,000		1
53	77	누렁이	♂	-	-	300,000		1
54	77	누렁이	♂	-	-	180,000		1
합계						3,140,000	판매수량	11

수수료 금액 총합: ₩ 2,951,600

수납
2021.09.17
개경매장

(판매)농장: [] 352-1626- []
계좌송금: []

개경매장: []

경매 전표(구매자)

농장번호: [] (판매자): [] 서명: []

농장: [] 2021-09-30 15:11 2021년 9월 30일(수)

순서	양	견종	성별	상태	비고	구매금액	구매자	수
19	4	황구	-	-	-	230,000		1
22	6	황구	-	-	-	170,000		1
35	11	백구	-	-	-	75,000		1
50	15	황구	-	-	-	70,000		1
85	28	황구	♂	-	-	75,000		1
90	31	백구	-	-	-	125,000		1
111	77	누렁이	-	-	-	200,000		1
122	81	누렁이	♀	-	-	325,000		1
128	83	누렁이	♀	-	-	320,000		1
159	98	황견종	♂	-	-	30,000		1
170	98	백구	-	-	-	30,000		1
171	98	백구	♂	-	-	30,000		1
172	98	황구	-	-	-	30,000		1
177	99	황구	-	-	-	40,000		1
178	99	황구	♂	-	-	30,000		1
179	99	황구	♀	-	-	30,000		1
180	99	황구	♀	-	-	75,000		1
합계						1,885,000	구매수량	17

수수료 포함 총합: ₩ 1,99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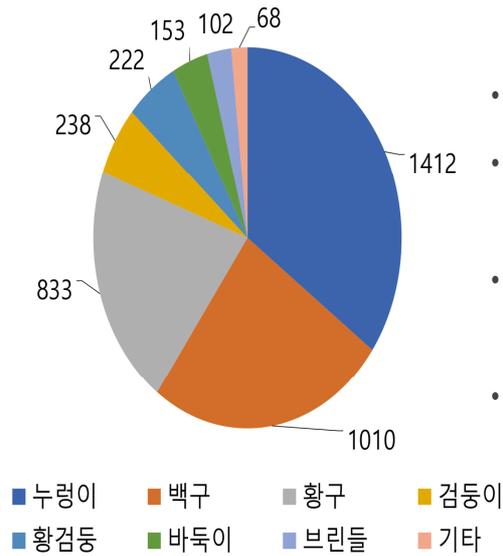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 파주소재 개경매장 내 계류된 개에게 급여된 축산폐기물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건종별 거래 마리수(구/판매 평균)



- 누렁이: 40kg 이상 대형견 도사 또는 도사혼종
- 백구, 황구, 브린들: 천연기념물 진도 또는 진도 혼종. 브린들(호피 무늬 진도 혹은 그 혼종)
- 검둥이, 황검둥: 검은색 혹은 네눈박이 진도 추정
- 기타: 어미와 자견, 발바리 등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순위	회원명	경매참여횟수	구매마리수	구매금액	평균구매액	월평균구매액	비고
구매 1위소	신0	28	412	₩81,400,000	₩2,907,143	₩27,133,333	* 구/판매자
구매 2위소	안00	32	267	₩67,345,000	₩2,104,531	₩22,448,333	* 구/판매자
구매 3위소	정00	22	185	₩50,530,000	₩2,296,818	₩16,843,333	* 구/판매자
구매 4위소	희0	31	156	₩40,405,000	₩1,303,387	₩13,468,333	* 구/판매자
구매 5위소	수0	15	121	₩33,050,000	₩2,203,333	₩11,016,667	* 구/판매자
구매 6위소	상0	31	200	₩32,800,000	₩1,058,065	₩10,933,333	
구매 7위소	정0	20	159	₩27,318,000	₩1,365,900	₩9,106,000	
구매 8위소	경0	18	105	₩26,030,000	₩1,446,111	₩8,676,667	
구매 9위소	경0	31	260	₩24,835,000	₩801,129	₩8,278,333	* 구/판매자
구매 10위소	일0	23	121	₩24,395,000	₩1,060,652	₩8,131,667	* 구/판매자

* 구매액 기준 상위 10개 구매자의 일 평균 구매액 및 총 구매액(개상인(도살자)) * 구/판매자 = 구매와 판매를 병행했음을 의미함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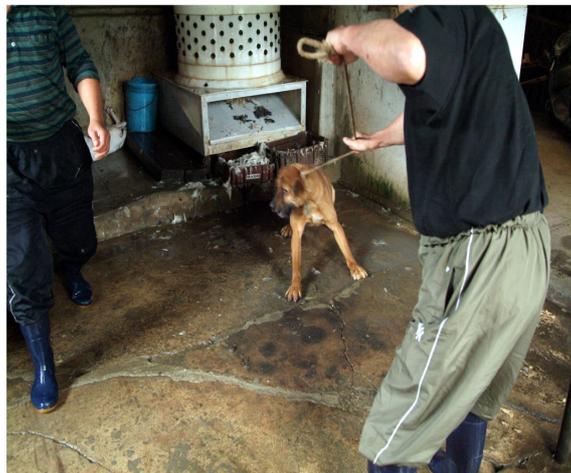
순위	회원명	경매참여횟수	구매마리수	구매금액	평균구매액	월평균구매액	비고
구매1 위소	용0	13	334	₩98,785,000	₩7,598,846	₩32,928,333	
구매 2위소	초00	4	118	₩35,290,000	₩8,822,500	₩11,763,333	
구매 3위소	지00	10	95	₩35,170,000	₩3,517,000	₩11,723,333	
구매 4위소	민00	8	83	₩31,410,000	₩3,926,250	₩10,470,000	
구매 5위소	녹0	4	74	₩24,550,000	₩6,137,500	₩8,183,333	
구매 6위소	금0	3	79	₩24,195,000	₩8,065,000	₩8,065,000	
구매 7위소	이00	20	185	₩22,680,000	₩1,134,000	₩7,560,000	
구매 8위소	연0	29	204	₩22,360,000	₩771,034	₩7,453,333	
구매 9위소	신00	32	164	₩19,990,000	₩689,310	₩6,663,333	* 구/판매자
구매 10위소	차0	2	54	₩18,560,000	₩9,280,000	₩6,186,667	

• 판매액기준 상위 10개 판매자의 일 평균 판매액 및 총판매액(개농장)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 도살장 실태

- 도살장 유형: △도살과 지육 납품, △개농장 또는 번식 · 도살 겸업, △개인 반려견 도살업 겸업, △다수 도살업자들의 공동 도살장(도살정거장) 등
-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최소 6개의 현행법에 저촉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시설위치	개체 특징	계류장 형태	도살장비	도살장 형태	개 매입처	지육 유통	도살자 연령대	비고
고양시 설문동 (20. 12. 9)	리트리버, 허스키 등	뜬장 도살상 외부 대각선 근거리	전기쇠꼬챙이 (철사)	샌드위치 판넬 가건물	파주 경매장	모란시장 통개(확인)	60대	도살장인근 거주 불법건축물 개털 방지 미니피그 방지 음식쓰레기 급여
고양시 용두동 (21. 7. 1)	핏볼, 초대형 도사, 그레이트덴, 케인 코르소	뜬장 도살장 외부 바로 옆	전기쇠꼬챙이 (굵은철사)	샌드위치 판넬 가건물	미상	식당 납품 주문도살 반려견 도살서비스	50대	거주지에 도살장 보유 개털 방지, 축산폐기물 급여
의정부시 신곡동 (21. 7. 17)	진도 혼종, 소형 품종견, 소형 발바리	뜬장 도살장 내부	전기쇠꼬챙이 (얇은철근)	비닐하우스	파주 경매장	개소주집 보신탕집	70대	내장 방지 계류공간에서 도살 바닥 핏물 구더기 최악의 위생상태 페라면사리 급여
여주시 왕대리 (21. 8. 8)	진도혼종 사냥개 중대형견	뜬장 도살장 내부	전기쇠꼬챙이 (굵은철심) 그물케이지 내 집단도살	슬레이트지붕 샌드위치 판넬 가건물	파주 경매장	모란시장 통개(추정)	설문동 도살자 (동일인)	도살정거장 흑염소 불법 도살병행 설문동 폐쇄 후 도살 장소 이전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 도살장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

행위구분	주요 연관 조항	실태	위반 여부
계류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69조 영업의 허가 (동물판매업)- 경매장(시설) 제69조 영업의 허가(동물생산업)- 도살장(시설)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급여, 더러운 뜬장에서 낫선 여러 마리의 개체가 계류, 질병이환 개체 격리나 치료 없음	위반
		최악의 사육공간 및 위생, 부적절한 먹이로 질병 감염 빈번, 동종의 개체가 도살되는 모습 상시 인지	위반
		무허가 시설 및 영업	위반
		무허가 시설 및 영업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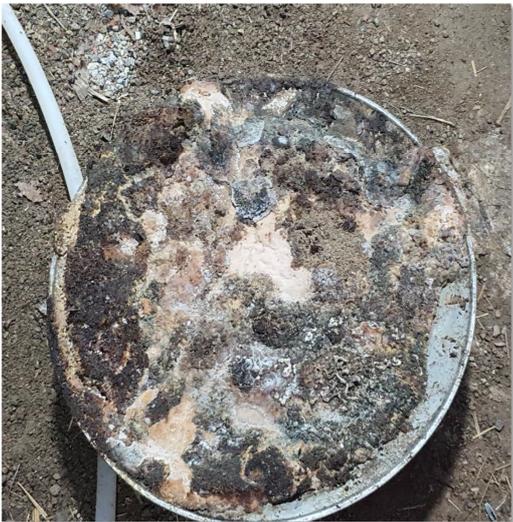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 도살장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

행위구분	주요 연관 조항	실태	위반 여부
핸들링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1조(동물의 운송)	올가미로 조여 끌어내 도살위치로 끌고 가거나 막대기 골프채로 상해를 입힘	위반
운송	제11조(동물의 운송)	케이지에 동물들을 구겨 넣어 신체적 상해와 장시간 고통을 유발 운송 시 물과 사료 공급 안함, 격리 공간 부재, 더럽고 손상된 케이지 반복 사용으로 상해 유발, 더운 날씨에 천막으로 은폐하여 호흡곤란 유발, 병든 동물, 임신중 동물도 구분없이 그물망 케이지에 구겨 넣는 학대 자행	위반
도살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3조(동물의 도살 방법)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한 잔인한 도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동물의 임의 도살	위반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 도살장의 위생 방역 수준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 도살장의 위생 방역 수준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 도살장의 위생 방역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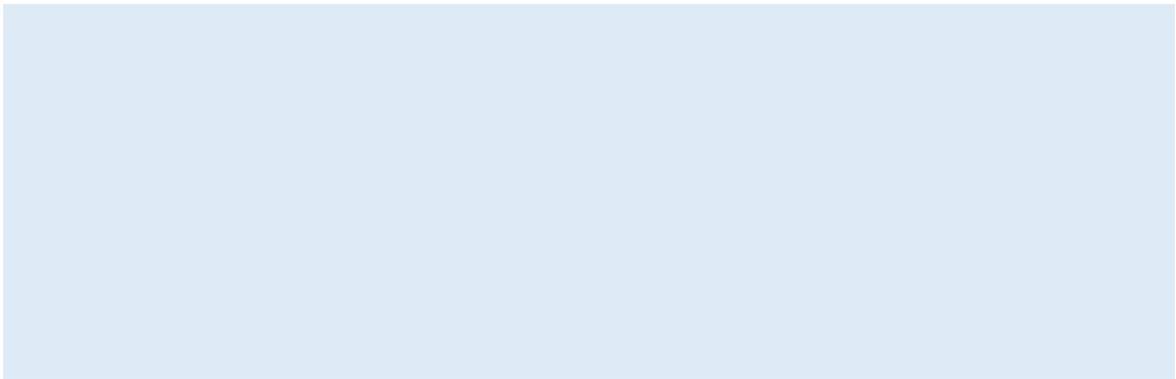
5. 개경매장 및 도살장 실태- 유통

- 폐사체 해체 유통, 개 운반 트럭으로 지육 유통



06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가 로드맵



6. 개 식용이 야기하는 동물학대와 동물복지체계 와해

개 식용 산업이 야기한 심각한 동물복지 훼손

- 경매장과 도살장은 극단적 형태의 동물학대가 발생하는 현장임. 도살장에서 개들은 직·간접적 학대 경험
- 국내 개 도살 방법은 목을 매달거나 전기 쇠꼬챙이 감전사, 둔기 사용이 전부임. 동물이 극한의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심각한 생명권 침해
- 방역체계 부재로 오염된 환경, 부패한 음식물쓰레기, 전염병 등으로 질환에 노출됨

개농장 양산 소위 맹견과 천연기념물 진도의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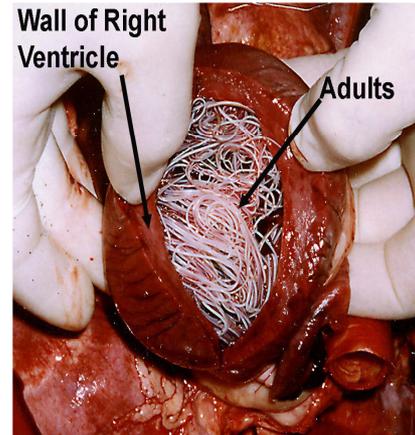
- 소위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의 무분별 번식이 개농장 및 도살장에서 지속해 일어남
- 진돗개 내지 진도혼종은 4개 도살장을 폐쇄하며 가장 많이 구조된 견종임. 천연기념물 진도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로 수많은 진돗개들이 방치, 학대됨



6. 개 식용이 야기하는 동물학대와 동물복지체계 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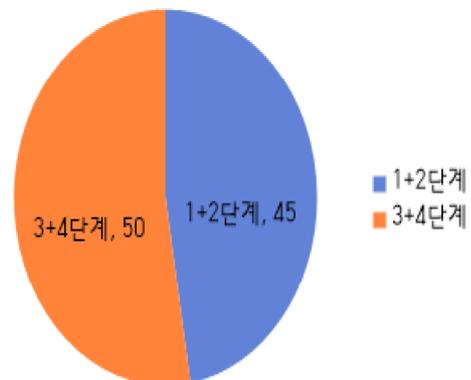
개 식용의 사회적 비용

질병명	마리당 치료비(원)	치료 개체수	치료기간 (최소비용기준)	총 치료비(원)
심장사상충	2,000,000	37	1개월	74,000,000
파보	1,500,000	2	2주	6,000,000
홍역	5,000,000	7	1개월	35,000,000
		46		115,000,000
심장사상충/ 파보바이러스/ 홍역 질환 치료 비용(치료행위, 약 등 포함)				



6. 개 식용이 야기하는 동물학대와 동물복지체계 와해

개 식용의 사회적 비용- 4개 도살장 구조건들의 사회화 비용



6. 개 식용이 야기하는 동물학대와 동물복지체계 와해

개 식용의 사회적 비용- 4개 도살장 구조견들의 사회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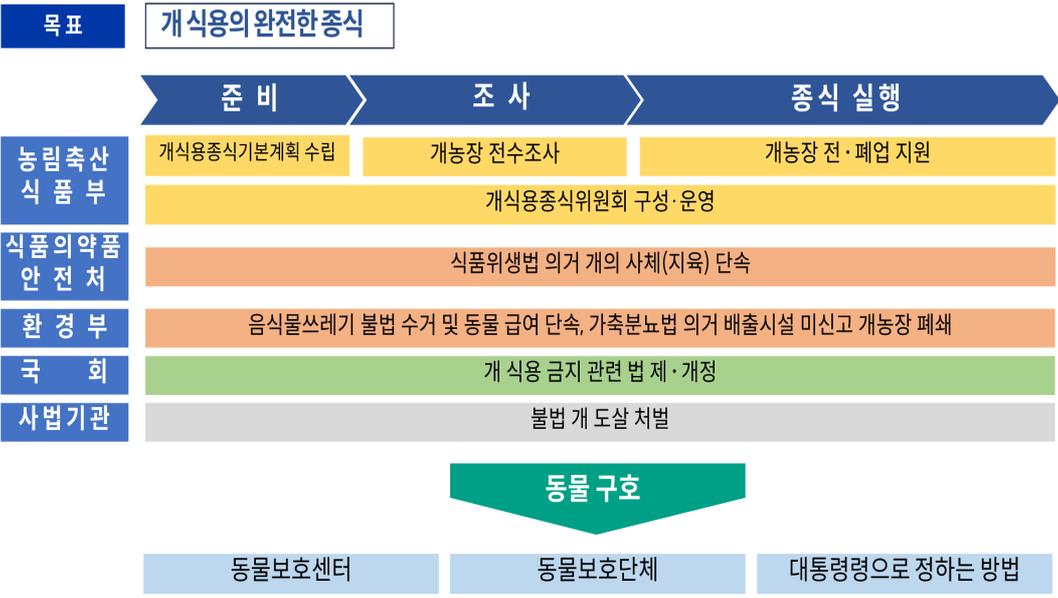
구분	단가(원)	개월수	마리수	총액(원)
사회화 훈련	700,000	10	45	315,000,000

마리 당 평균 사회화 훈련 비용 7,000,000원 소요 (VAT 포함)

6.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가 로드맵 - 현행법 위반 및 조 기종식의 당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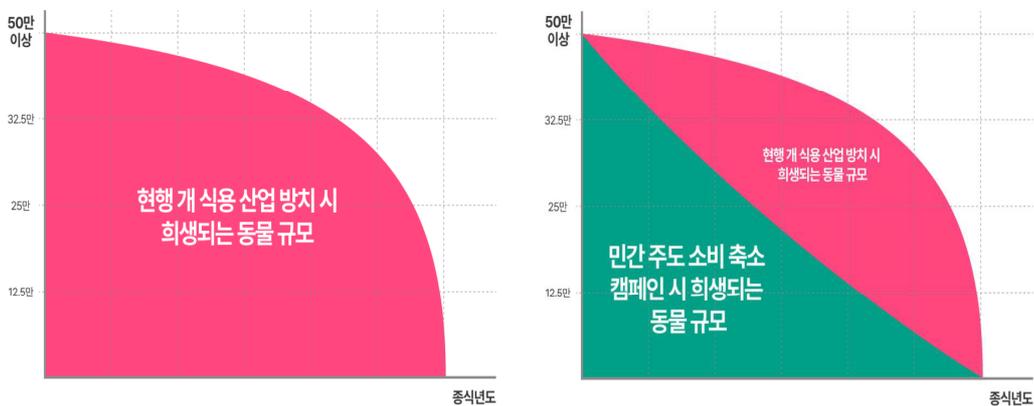
- 개 식용 산업은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최소 6개 현행법 위반
- 행정당국의 적극적 단속·관리 조치 부족
- 잔인한 생명 박탈, 이를 통해 얻는 상당 규모의 수익,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의 괴리 등 개 식용 산업 존립은 시민사회 수용성을 잃음

6.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가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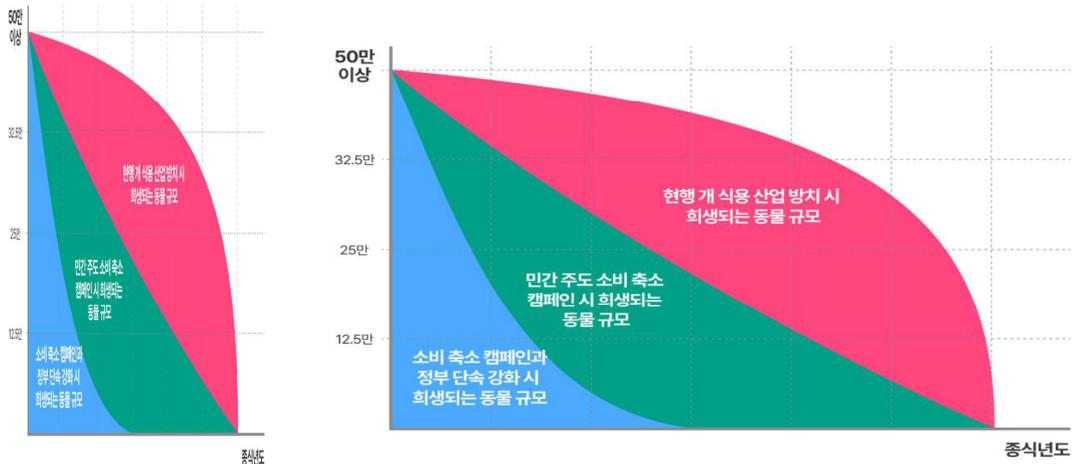
6.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가 로드맵

· 최단기간 최소 희생통한 종식



6.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가 로드맵

- 최단기간 최소 희생을 통한 종식-희생되는 동물의 개체 수 최소화화를 위해 소비 축소 캠페인과 정부 단속 병행되어야함



• 육견협회 내부자료

2023년4월 현재가 및 1/4분기 시황조사내용
 *조사기간:4월 1~10일 최근일에 역점을 두었음
 * 조사요원 :00명
 저가와고가의 기준중 에이급이라도 정보 미취득으로 저가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5800~6100

강원도 :5800~6200

충남:5800~6000

충북:5800~6000

경남 :5700~6000

경북 5700~6000

전북 :5700~6000

전남5700~6000

제주 5400~6000

* 1/4분기 강아지 생산은 ~?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1/4분기 공실율은 ~?

25% 로 파악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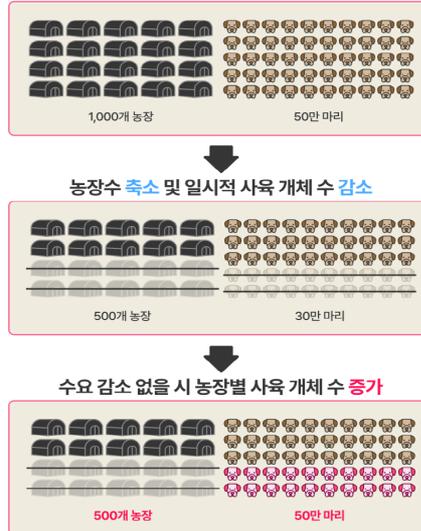
작년 1/4 분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거래동향은 일부 지역에서 저가격 거래하던 곳에서 200원정도 오른가격으로 판매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올해도 폐업하는 농가는 이어질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축되는 소비와 폐업하는 농가의 비율로 볼때 수요와 공급은 비슷한 바란스를 맞추어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6.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가 로드맵

- 최단기간최소희생을 통한 종식-수요(소비) 감소 없이 개농장만 폐업할 경우 잔존 농장별 사육 개체 수는 늘어나 희생되는 동물 규모는 이전과 동일



감사합니다

발제
2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과제

서국화 대표(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 발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과제

서국화 대표(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법률들과,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동물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법률들을 두고 있다.

‘개’는 토끼와 함께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이면서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차이점이라면 토끼는 축산물위생법상 가축에도 해당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973. 12. 24. 일부개정된 축산법 시행규칙(농수산부령 제557호)은 가축의 종류에 ‘개’를 포함시켰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이 1975. 8. 30. 전부개정된 시행규칙(농수산부령 제606호)으로 가축의 종류에 ‘개’를 포함시켰다가, 1978년 이를 삭제하면서 ‘개’의 가축여부에 관한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불일치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축산법상 가축들이 모두 그 식육의 유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축산법상 가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사육의 목적이 ‘도살 후 식육의 유통’에 있는 ‘개’의 경우에는 1978년 당시 ‘도살’에 대한 문제 의식에 의해 가축에서 제외시키는 정부의 결단이 있었다면, 축산법 역시 이와 통일되게 규정을 정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는 많은 법적 논란을 불러왔고, 실제 사육, 도살, 처리 및 가공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의 도살 및 유통은 도살과정에서의 동물학대 뿐만 아니라 방역과 공중위생에 큰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다.

2. 불법의 온상 개식용 - 현행 법규의 문제점

현재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개식용을 반대하는 시민과 단체들은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동물보호법」등을 근거로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은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¹⁾ 면적 60㎡이상의 개 사육시설(시행령 제8호의 별표2)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재 존재하는 2,900여개소의 개농장 시설에 관해 특별한 시설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60㎡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분뇨 배출 시설’이 유일하다. 이에 분뇨 배출시설을 적법하게 갖추고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라 ‘불법 개농장’이라거나 ‘미신고 개농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18평 이하의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사육하고 있는 개의 분뇨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후 식용으로 도살하고 유통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어서 ‘배출 시설 조차’ 설치 하지 않은 개농장을 방지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나. 폐기물관리법

개농장에서 사육되는 개들의 복지를 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그들에게 급여되는 음식물 쓰레기이다. 개농장주들은 폐기물 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개에게 급여하는 방법으로 사료비 지출 없이 개농장을 운영한다. 폐기물관리법은 그 재활용의 유형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급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²⁾, 이때 그 급여기준은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 일부개정]

별표·서식비교

• 별표목록 [별표 4의 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선택

• 별표연혁 [별표 4의 2] [시행 2023. 6. 11.] [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 일부개정] 선택

1) R-5-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2) R-5-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3) R-5-3: 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4)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나. R-6: 유기물질을 토질개선의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다만 위와 같은 유형의 재활용을 하는 경우 그 기준은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별표5의3]이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검정 결과 같은 법 제11호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과 그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의 소관부서인 환경부가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통해 규제한다. 그런데 시행규칙상 그 재활용의 기준을 사료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면, 최소한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에 따라 기준에 맞는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감독 및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재활용의 실태, 기준준수 여부, 시설 구비여부에 대한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비용(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축에 대한 급여”를 하도록 허용해 왔다.

이는 사료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사료관리법의 공정 및 기준과 전혀 무관하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동물에게 먹이고 있는 개농장주 등에게 시설요건 등의 아무런 제한 없이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지침규정과 개농장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차량까지 지원하는 등의 행정을 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급여가 개농장을 지탱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감소와 위 폐기물의 자원화 등 과학적이고도 도덕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인 환경부가 오히려 법적 근거 없이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며, 그 과정에서 사료값을 아끼기 위해 사료 대신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에게 먹이는 동물학대행위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신고의 방만한 수리 및 지원’으로써 적극 조장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사료관리법

전술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의 기준 즉,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5]가 정하고 있다³⁾.

○ 남은음식물사료(edible food waste, restaurant food waste)

- 1) 정의 : 대형요식업소, 기업체 부설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남은 음식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중 사료화 가능부분을 분리수거하여 이물질제거시설을 갖춘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시설에서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처리된 사료를 말하며, 최종제품에서 살모넬라(D그룹)가 검출되면 안 된다. 식품가공부산물류와는 별도로 분류하여 규정되어 있다.
- 2) 영양정보 : 남은 음식물 수거 지역, 수거 시기, 발생 형태 등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일정하지 않다. 원물상태의 대략적인 영양조성을 보면 수분 77%, 조단백질 5.0%, 조지방 1.9%, 조섬유 1.6%, 조회분 2.4% 이다.

3) 사료관리법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5호, 2022. 7. 22., 일부개정]

제8조(사료공정의 설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사료의 일반적 기준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고,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으며, 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3) 고려사항 :

- ① 남은음식물사료는 누구든지 반추동물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
- ② 반추동물 이외의 동물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가열·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분 14%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한다.
- ⑤ 남은음식물사료는 반드시 발효 등 가공 전에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강피류, 박류, 보존제, 생균제, 식품가공부산물류 또는 향미제를 혼합물질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합된 원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⑥ 남은음식물사료는 구리 함량이 29ppm(건물기준) 이하, 아연함량이 87ppm(건물기준) 이하, 휘발성 염기태질소 0.5% 미만, 셀레늄 함량이 2ppm 이하이어야 한다.

하지만 개농장에서 위와 같은 공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를 확인할 시설도, 방법도 없다. 개농장주들은 수집, 운반해 온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급여할 뿐이다.

2016년, EBS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에 방영되었던 김포 개도살 피의자에 대하여 (사)동물권행동 카라는 ① 개를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아 도살한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② 개들에게 인근 군부대 등에서 배출되는 상한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한 행위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 ③ 폐기되어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들에게 일상적으로 급여한 행위에 대해 사료관리법 위반 ④ 허가되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동물을 도살한 행위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⁴⁾, 위 피의자는 ④ 기재 혐의를 제외한 혐의들에 대하여 기소된 바 있다.

라. 동물보호법

앞서 언급한 법률들이 개의 사육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정들이라면, 동물보호법은

4) <https://ekara.org/activity/policy/read/7965>

주로 개의 ‘도살 행위’에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여 개의 도살을 처벌하고자 할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학대 행위임이 직접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대 현장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개를 죽인 정황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은 단연 ‘개 전기도살 사건’이었을 것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목을 매달거나 때려서 죽이는 방법은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개도살자들이 처벌을 면하고자 사용한 방법이 ‘전기봉을 이용한 도살’이었지만, 위 전기봉을 이용한 도살 역시 ‘잔인한 방법’으로서 처벌받는 행위라는 판결이 나오므로써 사실상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개의 도살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개도살은 ‘죽이는 방법’을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선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기봉을 사용한 개도살 금지’라는 일종의 행위 금지 규정이 창설된 것은 아니어서 마찬가지로 도살 현장을 적발해야만 처벌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에 관한 위 판결만으로 개식용이 금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실무에서 가장 답답함이 느껴지는 법률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하고(제7조), 작업장 또는 업소는 총리령이 정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하며(제8조), 위 과정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제9조). 또한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한 검사(제11조), 식육에 대한 검사(제12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모두 이를 먹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한 것이므로, 식용을 위한 개도살 역시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하는 ‘가축’에는 개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이하에서 정하는 벌칙 규정 역시 적용되기 어렵다.

‘개도살’은 허가 받은 작업장이 없을 수 없으므로, ‘개 도살’ 자체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답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이어야 하는데 ‘가축’을 도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다.항 기재 김포 개도살 사건에서 역시 ④항 기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살장소, 검사규정 위반 등의 행위는 범위반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⁵⁾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비교적 강한 편이다. 이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식육의 유통은 그 보건상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아무렇게나’ 도살하고 ‘아무렇게나’ 보관, 유통해도 처벌할 수 없는 개식육의 경우 동물권의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까지 야기할 수 있는바, 법률의 취지에 맞게 벌칙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바.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⁶⁾ 이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5)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6)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⁷⁾.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⁸⁾

위 고시에 따르면 식품인 동물성 원료는 다음과 같다.

2) 동물성 원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품 목
축 산 물	-	식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사슴고기, 닭고기, 꿩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칠면조고기, 메추리고기 등
	-	우유류	우유, 산양유 등
	-	알류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수 산 물	어류	민물 어류	가물치, 메기, 미꾸라지, 붕어, 잉어, 쏘가리, 잉어, 참붕어, 칠성장어, 향어 등
		회유	송어, 연어, 은어, 뱀장어 등

- 18 -

즉, ‘개’는 식육으로서의 식품의 원료인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7)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식품위생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의3(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서울에만 이른바 ‘보신탕’을 취급하는 음식점이 200여개가 넘는다. 앞서 언급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은 식육임에 더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므로 그 유통을 금지하고 단속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에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과 동물권행동카라는 2019. 12. 18.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으로 참여한 1,018명의 청구인 적격인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각하하였다.

3. 그동안 이루어진 입법적 개선의 노력

살펴본 바와 같이, 개식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는 수 개의 법률위반 행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행위 중에는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규정의 불완전성에 의해 처벌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법률의 미비를 보완하여 개식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법을 규제하기 위한 많은 입법적 노력이 있었다.

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제안

개식용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형식의 동물보호법 규정에 대하여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2017년 표창원 의원실에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규정 (개정 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개식용의 근절을 주되게 목적으로 한 형식이기도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 체계적으로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위 제안에 따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18. 6. 20. 국회의원 표창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나 (의안번호 2013958)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PNR 동물보호법 개정 제안]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하는 경우 2.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3. 수의학적 처치로서 불가피한 경우

나. 축산법 및 관련 규정 개정 제안

PNR은 위 동물보호법과 함께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식용을 전제로 한 사육을 가능하게 하면서 합법적 도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 전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따라 개의 대량 사육이 불가능해질 경우 가축분뇨 처리 시설 역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축분뇨법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위 제안 중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2018. 5. 15. 국회의원 이상돈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나(의안번호2013577) 이 역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고 남은 폐기물을 인근 토지에 무단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2017. 9. 28. 국회의원 한정애의 대표발의로 발의되기도 하였으나(의안번호2009713)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라. 개, 고양이의 식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개와 고양이의 식용금지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려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동물보호법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폐업 및 업종전환을 지원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020. 12. 30. 국회의원 한정애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 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시행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정하여 동물학대 처벌의 범위를 현저히 좁게 하었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2023. 4. 27.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규정했던 기존 시행규칙과 달리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였다.

개정 전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규칙
<p>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p>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위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넓게 포섭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잔인한 방법’인지를 일일이 따져야 했던 개도살 역시 전면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었다.

시행규칙의 개정이 ‘개식용의 금지’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위 가.항 기재 개정 제안 법률안과 유사한 형태로서 죽이는 방법과 장소를 불문하고 허가, 면허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그 개정이 ‘시행규칙’ 단계에서 이루어져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의 금지 선언’과 ‘예외사유’규정이라는 완성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열거된 ‘정당한 사유’는 PNR이 제안했던 내용 못지 않게 한정적이고 합리적인 경우만을 정하고 있어서 불법의 온상이었던 개도살을 제어할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4.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의 발의, 앞으로의 과제

가. 주요내용

2023. 6. 29.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 되었다(의안번호 22926).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안 제6조).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안 제8조) 식용개농장의 폐업지원금에 관한 구체적 규정(안 제9조) 및 전업지원 규정을 두었다(안 제10조).

나아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

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그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안 제13조).

나. 의미

개식용 종식에 관한 법안이 특별법 형태의 제정법률안으로 발의되었다는 것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만큼 무르익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그동안 현장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느꼈던 개개 법률에 대한 문제의식이 법률 개정 요구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발의되었던 일부개정법률안들 모두 개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음은 분명하나, 명확하게 ‘개의 식용 금지’를 선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를 합법적 도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1978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도살을 위해 개를 사육하고 있다. 개식용의 종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적 합의의 부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법률로 불법적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행정과 입법의 부작위이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 법률안은 위와 같은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적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다. 과제

지금까지 개식용 종식을 위한 많은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동물’에 관한 법률안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여기에 ‘사회적 합의’라는 구실은 항상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왔다. 이제는 이러한 도돌이표식 논의를 벗어나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입법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이제 개식용 자체의 금지를 선언하는 특별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심사와 그에 따른 법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특별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발의되었던 축산법, 가축분뇨법, 축산법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인 개에 대하여 ‘반려(伴侶)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부재를 핑계삼아 동물등록제도를 회피하고, 가축으로 사육하는 등 개별 법률들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고 통일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개식용의 종식’은 그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동물을 대하는 우리 사회 의식변화의 시작이며, 이를 시작으로 제도적 통일성과 체계성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갈때 진정한 동물복지 실현과 동물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발제
3

해외 개 식용 금지 현황과 개농장 전업 지원 사례

이상경 팀장(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발제

해외 개 식용 금지 현황과 개농장 전업 지원 사례

이상경 팀장(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2017년 9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부터 2018년 5월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 (개를 가축의 종에서 제외), 6월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2020년 12월 한정애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개, 고양이의 도살 처리 및 식용 판매를 금지), 2023년 4월 태영호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개 고양이 도살 판매 금지 및 폐업자 지원) 그리고 6월 한정애 의원의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 농장의 폐업 및 개 농장주의 전업을 지원하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까지, 개 식용 산업을 종식하고자 하는 법제적 노력이 국내에서 수차례 있어왔다.

한국이 유일한 개 식용 국가는 아니지만,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집단 사육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에서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은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또한 개 식용을 반대하고 법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동물복지와 공중보건 및 환경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개 식용 산업이 법으로 국내에서도 금지되기에 앞서, 이미 개 식용이 금지된 아시아 국가들의 현황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개 식용 산업에 종사하던 농장주들의 성공적인 전업 및 폐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개 식용 산업의 종식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해외 개 식용 금지 현황

1. 대만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개와 고양이의 도살과 식용을 금지한 국가가 되었다. 2007년 개와 고양이를 도살하는 것과 개나 고양이 고기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식용 자체가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개고기를 사거나 먹는 사람은 최대 약 8,200 USD의 벌금을 물게 된다. 2015년 국민당 (Kuomintang) 의 왕 유민(Wang Yu-min)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7년 4월에 법안은 통과가 됐다. 동물보호법 (Animal Protection Act) 12.3.1에서 개나 고양이를 죽이고, 그 부산물을 사고, 팔고, 먹고, 가공하는 것은 금지라고 명시하였다.¹⁾²⁾

2. 홍콩

영국령 당시 홍콩은 1950년 1월부터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를 개 고양이 관리 규정 (the Dogs and Cats Ordinance)을 통하여 금지하였다. 해당 법에서 개와 고양이 도살과 이 동물의 고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³⁾⁴⁾ 1998년 2월 홍콩에서 길거리 떠돌이 개를 잡아먹으려던 사람이 징역 1개월과 2000 홍콩 달러를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 2006년에도 개 두 마리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한 것에 대해서 네 명의 남성에게 30일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가 있다.⁵⁾

1)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M0060027>

2) Daly, N. (2017). *Eating Dogs Banned in Taiwan—A First in Asia*. [online] Culture. Available at: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culture/article/taiwan-dog-cat-meat-animal-welfare-china-korea> [Accessed 10 Jul. 2023].

3) Poon, S.W., (2014). Dogs and British colonialism: The contested ban on eating dogs in colonial Hong Kong. *The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42(2), pp.308-328.

4)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67>

5) World Dog Alliance . (2020). *Did you know? Hong Kong has banned dog and cat meat consumption*. - 世界愛犬聯盟. [online] Available at: <https://www.worlddogalliance.org/did-you-know-hong-kong-has-banned-dog-and-cat-meat-consumption/> [Accessed 10 Jul. 2023].

3. 필리핀

개고기 거래는 1998년 동물복지법 (the Animal welfare Act)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이 되었다. 해당 법은 ‘식용’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양, 가금류, 토끼, 물소, 말, 사슴, 악어를 제외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였다.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만 개 식용은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⁶⁾ 이후 2007년 광견병 방지법 (Anti-rabies Act)에서 지방 정부의 개고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좀 더 명확히 개 식용을 금지하였다.⁷⁾

4. 싱가포르

개 식용 금지를 명시하는 법은 없지만, 싱가포르 축산법에 개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⁸⁾ 싱가포르 자체에서 개 식용이 주류 식품으로 자리 잡은 적은 없지만 개고기 거래와 식용은 존재해 왔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법적으로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생산된 고기만 소비할 수 있고 각 도축장은 허가받은 동물만 도축할 수 있다. 가축에 포함되지 않은 개는 도축에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관련 논문과 여러 현지/국제 동물보호단체 웹사이트를 통하여 싱가포르에서 개 식용 또는 개고기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금지임을 짐작할 수 있다.⁹⁾¹⁰⁾

5. 태국

태국은 2014년에 처음 동물 학대 방지 및 동물 복지법 (the Prevention of

6) https://lawphil.net/statutes/repacts/ra1998/ra_8485_1998.html

7) https://paws.org.ph/downloads/ra9482_anti_rabies_act_of_2007.pdf

8) Practical Law. (2013). Agricultural Law in Singapore: Overview | Practical Law. [online] Available at: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27-7416?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co_anchor_a429571](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27-7416?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co_anchor_a429571) [Accessed 10 Jul. 2023].

9)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2023). *Dog Meat Trade -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online] Available at: <https://www.hsi.org/issues/dog-meat-trade/> [Accessed 10 Jul. 2023].

10) Czajkowski, C., (2014). Dog meat trade in South Korea: A report on the current state of the trade and efforts to eliminate it. *Animal L.*, 21, p.29.

Animal Cruelty and Provision of Animal Welfare Act) 제정하였다. 이후로 동물의 지각력을 법체계 내에서 인지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4년 태국정부에 개고기 도축과 거래를 금지 촉구를 위한 청원에 50만 명 가까운 시민이 동참하기도 하였다.¹¹⁾ 2014년 제정된 법에 따르면 식품으로 쓸 수 있는 동물이 아닌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금지된다.¹²⁾ 같은 해 온라인 뉴스 매체를 통해 2014년 정부는 개와 고양이 고기 거래와 도살을 사실상 금지했으며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200 USD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

6. 인도네시아

2023년 3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 거래가 금지되었다. 법령에서 개를 음식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 식용과 거래를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자카르타주에서 선제적으로 개와 고양이 고기 거래를 2023년 금지하였다. 광견병과 다른 인수 공통감염병 등에 대한 우려로 개와 고양이 도살과 식용을 금지하려는 노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다.¹⁴⁾

11) Worldanimalprotection.org. (2014). *Thailand / World Animal Protection*. [online] Available at: <https://api.worldanimalprotection.org/country/thailand> [Accessed 10 Jul. 2023].

12) Cruelty Prevention and Welfare of Animal ACT B.E. 2557 (2014) available at: https://dld.go.th/th/images/stories/law/english/en_cruelty_prevention_act2014.pdf

13) Thailand, in (2014). *Animals no longer face 'dog's life' in Thailand*. [online] Aa.com.tr. Available at: <https://www.aa.com.tr/en/world/animals-no-longer-face-dogs-life-in-thailand/102114> [Accessed 10 Jul. 2023].

14) Kitty Block (2023). *In major win for animals, Indonesia's capital city bans dog and cat meat trades*. [online] A Humane World. Available at: <https://blog.humanesociety.org/2023/03/in-major-win-for-animals-indonesias-capital-city-bans-dog-and-cat-meat-trades.html> [Accessed 10 Jul. 2023].

개 식용 농장 폐쇄 및 전업지원

한국 HSI는 개 식용 산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벗어날 수단과 방법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는 개 식용 농장의 농장주를 해당 산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를 마리당 매입하는 활동이 아닌 해당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기 위해 사용했던 장비 및 케이지의 철거에 대한 지원까지 이루어져 농장주가 성공적인 전업 또는 폐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통해 농장주가 향후 개 식용 산업 혹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한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HSI의 도움을 받아 전업을 한 농장주들은 약 초 농사, 미나리 농사, 블루베리 농사 등 농업으로 전업을 하기도 하였고, 지원금을 기초자금으로 살수 트럭 사업 운영, 철거 업체 운영 등 사업체로 전업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 HSI는 해당 활동을 통해 개 식용 산업의 직접 종사자인 농장주들과 함께 일하면서 점진적 금지를 위한 현실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2015년 첫 번째 농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8개의 전국 각지에 위치한 농장을 폐쇄하였으며, 2700마리 이상의 개들을 구조하여 해외 입양을 도왔다. 이하에는 한국 HSI의 농장 폐쇄 및 농장주 전업 활동의 대표적 사례들과 농장주의 발언을 취합하였다.

1. 사례 1

2017년 11월/12월 - 10번째 농장,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 HSI는 해당 농장에서 178마리의 개를 구조하였으며, 농장주 김 씨는 현재 철거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농장주 김 씨의 발언:

- 처음엔 식용견 농장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들어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여름철에도 소비가 극감하여 벌이가 작년에 비해 1/3밖에 안됐던 것 같다.
- 강아지를 좋아하는 나의 어린 딸에게 내가 식용견 농장을 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보기 안 좋을 것 같았다.

- 이 개들이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가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마음이 좋았다.

2. 사례 2

2018년 10월 - 13번째 농장,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 HSI는 해당 농장에서 200여 마리의 개들을 구조하였으며, 농장주 이 씨는 현재 은퇴 후 약초 농사를 짓는 중이다.

농장주 이 씨의 발언:

- 처음 농장을 시작할 때 주변 지인들이 식용견 농장이 은퇴 계획으로 좋다고 들었다. 하지만 농장을 시작한 이래로 개고기 소비는 계속해서 극 감소하고, 거의 돈을 벌어난 적이 없으며 되려 계속해서 돈을 잃고 있다.
- 농장을 계속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 내 생각에는 많은 식용견 농장주들이 농장을 그만두고 싶어 할 것 같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은 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농장주들도 도와주기 때문이다.

3. 사례 3

2020년 5월 - 16번째 농장,

충청남도 홍성군

한국 HSI는 70마리 이상의 개를 구조하였으며, 농장주 김 씨는 쌈 야채 농사를 계획 중에 있다

농장주 김 씨의 발언:

-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개를 좋아하다 보니 개 농장을 하게 되었다. 나 스스로 단 한 번도 개고기를 좋아한 적이 없기도 하다. 몇 마리의 개들을 키우다 보니 금세 20-30마리가 되어버렸고, 당시 돈벌이도 필요하고 해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에 없었다. 하지만 농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었고 주변 압박이 점점 심해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다.

4. 사례 4

2023년 3월 - 18번째 농장,

충청남도 아산시

한국 HSI는 해당 농장에서 196마리의 개들을 구조하였으며, 농장주 양 씨는 현재 농장 부지를 여러 가지 작물 재배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

농장주 양 씨의 발언:

- 화물차 운전을 오래 하다가 안전에 위협을 느껴 동물을 키우기로 했다.
- 처음에는 소를 키우려고 했지만 동네에서 한두 마리씩 버리고 가는 개들을 키우다 보니 농장을 하게 됐다.
- 핸드폰 카메라 시대에 어디서 누가 신고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주위에서 안 좋게 보고 신고하는 사람도 스스로도 무슨 일을 한다고 떳떳하게 말하지도 못했다.
- 좋은 기회로 농장을 정리하게 되니 마음이 후련하다. 가족들도 모두 잘한 결정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농장주들은 개 농장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점차 줄어가는 개 식용에 대한 수요와 변해가는 사회의 인식에 직업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했다. 개 식용 산업에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전업과 폐업을 도와준다면 대다수의 농장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보았다.

개 식용이 금지된 다른 해외 아시아 국가들에서, 개 식용은 동물보호와 질병 문제 등으로 금지가 되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집단 사육하고 도살하는 한국의 개 식용 농장은 세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개 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

대 문제는 자명하며 인간 건강에 미칠 우려 또한 점차 큰 목소리로 제기되고 있다. 농장에서 개들은 기초 접종조차 받지 못한 채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부분 농장주들이 직접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통해 개 식용 산업과 정부 동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보고자 하였다. 농장 폐쇄와 전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장주분들의 말을 참고하면, 현재 남아 있는 농가의 농장주들은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전업과 폐업에 동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의된 법안의 통과로 한국 또한 개 식용 산업 종식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

토론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

좌장 :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

천명선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

김태수 팀장(경기도 동물학대방지팀)

김지숙 기자(한겨레 신문 애니멀피플)

김세진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토론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육하고, 도살하고 판매 및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의 의미

천명선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개식용을 그만 두는 일은 훨씬 더 현실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개식용을 종식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 학술단체에서도 한국의 개식용과 이를 종식하기 위한 움직임을 매우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문제를 위해 힘써온 시민 단체들과 학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희망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이 분석한 설문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하면서 관련 단체와 정부 부처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식용 반대”라는 간략한 문구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고 이 의미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동물 이슈는 마치 찬성과 반대의 편을 나누어야 하는 것처럼 다뤄집니다. 개식용 문제도 찬성과 반대의 논쟁인 것처럼 다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설문 결과에서 그동안 찬성과 반대의 대립각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개식용을 전통문화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9%에 불과했고, 이를 오히려 동물학대로 보는 관점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67.4%에 달했습니다. 이미 지난 10년간 개고기를 먹지 않은 응답자는 약 80%였고, 87.1%는 앞으로 전혀 먹을 의도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93.4%는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식용 금지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 중 개식용 금지가 국가의 동물복지의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3%, 개식용 금지를 위해 동물복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찬성하는 응답자도 87.1%에 달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위생의 문제보다는 잔인한 도살과 사육 과정, 개에 대한 애정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같은 무게로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도 개인의 취향과 권리에 대한 법적 금지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어서이지, 개식용 산업의 보호나 개를 식용으로 다루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회색지대에서 방치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개식용 산업을 종식시킬 방법이 법적인 금지라면 이 역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종식할 것인가”를 의논할 단계이지 더 이상 종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찬성과 반대의 논쟁을 지속할 시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개식용 종식의 과정은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과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의 의미를 함께 가지게 될 것입니다.

:: 토론

개 식용 관련 보도에 대한 여론과 정부 방향성 제시의 중요성

김지숙 기자(한겨레 신문 애니멀피플)

최근 몇 년간 개 식용 금지는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축산법 개정안, 동물보호법개정안,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모두 폐기된 이후 잠시 가능성이 침체 되긴 했지만, 2021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을 내놓으며 관심이 집중됐다.

때문에 2021년 11월 정부의 주도로 꾸려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사회적 논의기구)는 지난 30년 개 식용을 둘러싼 묵은 갈등과 과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애초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목적과는 달리, 두 차례 기한 연장 끝에 지난해 7월 무기한 연장을 발표했다.

1년 8개월간의 논의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은 개 식용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잇단 개 식용 금지 발언을 통해 불씨를 지폈고,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 등이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이슈를 추동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기구는 여전히 뒷짐을 진 상태다. 지난해 7월까지 총 17번의 회의(전체회의 8회, 소위원회 9회)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위원회의 지속 여부를 정하는 투표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간의 진행 상황이나 조사 결과를 묻는 시민들의 궁금증에는 충실한 답변을 내놓은 바가 없다.

이런 가운데 개 식용 종식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사칭죄로 고발하는 한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잇따라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7월 8일 서울 보신각에서 진행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 대집회’ 현장에서는 맞은 편에서 ‘맞불 집회’라며 개고기 시식회를 열기도 했다.

반복되는 논쟁으로 유발되는 무관심과 피로감

이러한 양상은 과거 수십 차례 반복되었던 갈등의 평행선을 떠올리게 한다. 개 식용 종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개 식용 산업이 위반하는 현행법(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동물보호법 등)을 지적하며 정부·지자체의 법 집행을 촉구하고, 산업 종사자들은 개가 축산법상 가축인 점을 들어 생존권 침해를 주장한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보는 시민들의 피로감과 무관심 혹은 무력감이다. 지난해 강원대 동물법센터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천명선 수의인문사회교실 연구팀이 공개한 개 식용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응답자의 64.1%에 달했다.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35.9%였다.

그러나 개 식용이 앞으로 지속될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도 51.9%나 됐다.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48.1%)보다 근소하게 앞섰는데 연구팀은 이를 ‘지속되는 논쟁으로 인해 변화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런 논쟁의 반복은 최근 한겨레 보도에 달린 댓글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7월 8일 <“내년엔 만나지 말자” 개 식용 종식 집회 ‘종료’ 외친 까닭은>에 달린 포털 댓글을 보면 개고기 식용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과 개 식용 산업이 불법적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개고기 법제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한 시민들은 “개고기는 먹지 않지만 개인의 취향 문제 아닌가” “개고기는 안 먹지만 이걸 법으로 정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야 하나”과 같이 적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 도살은 불법이다” “비위생적 환경과 비윤리적인 도살로 개 사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보신탕집 거의 없다. 어차피 없어질 거 왜 이리 난리들인가”와 같은 댓글도 다수다.

같은 2023년 한국 사회의 시민인데 왜 이리 다를까.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35.9%의 응답자가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사유가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취향은 인간의 기본 권리’(81.3%)이기 때문이라 답했다.

과연 개고기를 먹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일까. 개고기가 생산되며 수반되는 주요 법규의 위반 사항은 여럿이다. 동물학대와 환경파괴를 제외하고라도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상 식재료(식품 공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애초에 ‘먹을 자유’와 상관없이 개고기는 국가가 인정한 먹거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걸까.

정부가 이를 명확히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 한 번도 개고기를 가공·유통·조리하는 업체를 단속한 사례가 없다. 환경부 또한 개에게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도 불법 수거를 단속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바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 동물보호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개농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학대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개 사육과 도살이 학대라는 시민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은 앞선 판결과 법 개정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대법원은 개 전기봉 도살을 동물학대로 판결했고, 지난 4월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개 도살을 학대로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앞선 한겨레 보도뿐 아니라 개 식용 문제를 다룬 여러 언론 보도의 댓글을 보면 시민들이 개고기나 개 식용 산업의 불법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다

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태에서 개고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논의를 과거 수준에 머무르게 할 뿐 아니라 무관심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는다.

또한 정부가 꾸린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 당시 큰 관심을 얻었던 것에 반해 오랜 기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모습은 시민으로 하여금 체념이나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위원회가 무기한 연장된다는 한겨레의 보도 <국민은 몰랐는데, ‘개식용 논의’ 또 연장…“정부 종식 의지 있나”>기사의 댓글에는 이런 여론이 엿보인다. 시민들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논의도 대책을 세워라. 자꾸 미루지 말고”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중요한 문제이니 국민투표로 가보자. 밀실 위원회에서 맘대로 결론 내리지 말고” 등의 댓글을 달았다.

같은 사실을 보도한 조선비즈의 <‘15년 vs 8년’ 이견에 ‘개 식용 종식’ 논의 헛바퀴…농식품부, 결론 유보> 기사에도 비슷한 여론이다. 시민들은 “개 고양이 식용 종식에 찬성한다. 일 미루지 말고 빨리 법을 바꿔라” (“개 식용 종식이) 합의할 문제냐. 차라리 집어치워라” “도대체 합의가 왜 필요한가. 불법적인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라고 썼다. 정부의 개 식용 문제를 위한 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이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빛 좋은 ‘사회적 합의’와 세대 갈등

당연히 기사 단 몇 편의 댓글로 여론을 가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국민 30~40%는 왜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지 않는가.

이 궁금증을 좀 더 풀기 위해 지난달 한겨레 <애니멀피플>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알아보기로 그립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하고 했다. 그러나 비영리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한 전문가로부터 “진행이 불가

능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개 식용 금지에 관한 인터뷰는 섭외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섭외가 되더라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조언이었다.

전문가는 그 이유로 첫째, 개 식용은 이미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개 식용 금지에 반대하는 인터뷰 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봤다. 둘째, 개 식용 금지에 반대하는 시민은 대체로 개 식용 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동물 학대, 불법 도살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상했다. 셋째, 이미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개 식용 산업에 대한 금지 법제화에 대한 시민 여론을 묻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을 것이란 점이었다.

이 전문가의 진단은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좋은 목표가 얼마나 도달 불가능한 지점인지 알려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대한 다수의 찬성을 확인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대동소이한 차이는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60~70%는 개 식용 금지 법제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논의기구가 2022년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성인남녀 1514명)에서도 응답자의 55.8%가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5.5%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답했고, 80.7%는 “앞으로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봐도 개 식용 산업의 종식은 더이상 합의가 필요한 찬반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법제화에 찬성하지 않는 30~40%의 폭을 줄이기 위해선 개 사육, 운송, 도살 및 개고기 유통, 조리가 불법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 식용 문제가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해

10월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이 여론조사 기관 닐슨코리아에 의뢰해 조사한 ‘한국 개고기 소비와 인식현황을 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개고기르 먹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16.7%)의 절반(45.2%)이 ‘개고기를 먹고 싶지 않았’지만 먹었다고 답했다.

이들이 개고기를 먹은 이유는 타인의 권유나 분위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답변은 특히 20대에 두드러졌다. 개고기를 권유한 상대는 아버지(29.2%), 직장 상사(22%) 등 순으로 윗사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댓글에서도 다소 과격한 비난은 자주 확인된다. 개고기 시식 집회를 벌인 육견협회의 기사에는 “사진을 봐도 모두 노인들이다” “세월이 바뀌어도 무식하다” “저거 다 40~60대임. 요즘 젊은이들은 절대 안 먹음”과 같이 세대를 특정하는 댓글이 달려있다.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을 지나치게 악마화 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일부 동물 활동가의 활동 방식 또한 세대 갈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의 전업 지원 사례를 보면, 1990년대 환경부의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함께 생겨난 많은 개농장의 주인들은 ‘개가 좋아서 모으다 보니’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농장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정부가 산업을 일부 용인해 지금까지 이어온 60~70대와 그 어느 때보다 동물복지 인식이 급격히 상승한 현재 20~40대가 바라보는 개 식용 산업은 간극이 클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심각한 세대별, 성별간 갈등에 개 식용 문제까지 방치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필요한 일이다.

개식용,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갈등과 논쟁을 봉합하기 위해선 정부의 뚜렷한 입장과 로드맵이 발표가 중요하다. 사회적 논의기구가 개 식용 산업 종식에 합의하고 시기를 발표하면, 시

민들도 개 식용 종식을 자연스레 인지하게 된다.

개고기 산업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명확한 사인을 주는 것은 일반 시민뿐 아니라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하다.

지난해 사회적 논의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개농장은 1156곳, 사육 두수는 52만 1000여 마리였다. 이 수치는 농가당 평균 450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수년간의 노력과 비용,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뿐 아니라 개 식용 산업 전·폐업에 대한 지원 근거, 방안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법안의 통과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정부의 개 식용 금지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비록 현재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긋고 있지만 소실점은 이미 개 식용 종식에 있다. 정부가 법 집행을 미루며 ‘종식 결론’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